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DC

SHINHAN
INVESTMENT
CORP.

Professional-Shinhan

세상에 프로는 많습니다.
하지만, 책임감 있는 프로는 많지 않습니다.
신한금융투자자는 이런 프로를 진정한 프로라 합니다.
책임감 있는 진정한 프로들의 회사, 신한금융투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기업명 기재

(이하 "위탁자"라 합니다)와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퇴직연금사업자 등록번호 제05-030-2호, 이하 "수탁자"라 합니다)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및 위탁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이하 "연금규약"이라 합니다)에 의하여 실시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이하 "이 제도"라 합니다)의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특정금전신탁계약(이하 "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합니다.

제1조 (신탁의 목적)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사용자가 재계약하지 않는 취지를 계약기간이 종료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서면에 의해 상대방에 대해서 통지하지 않는 한, 변경전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기간이 1년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자로서 이 계약의 위탁자를 말합니다.
2. "가입자"라 함은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수리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이 계약에서 "연금규약"이라 합니다)에 의해 이 제도에 가입한 자로서 이 계약의 수익자를 말합니다.
3. "운용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와 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4. "자산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와 법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5. "자산관리계약"이라 함은 법 제29조제2항에 의한 신탁계약 또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6. "급여"라 함은 가입자가 이 제도로부터 지급받는 일시금을 말합니다.
7. "근로자대표"라 함은 해당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합니다.
8. "적립금 이전"이라 함은 사용자가 이 제도를 관리하기 위하여 하나의 운용관리기관 및 복수의 자산관리기관과 운용관리계약 및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 자산관리기관 간에 금전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9. "적립금"이라 함은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이 계약에서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및 퇴직연금감독규정(이 계약에서 "규정"이라 합니다)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자산관리업무)

이 계약에 의해 수탁자가 수행하는 자산관리업무는 다음 각호의 업무로 합니다.

1. 계좌의 설정 및 관리
2. 부담금의 수령
3.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4.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전달하는 적립금의 운용자사의 이행
5. 급여의 지급
6. 그 밖에 자산관리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시행령이 정하는 업무

제4조 (신탁계약의 체결 및 신탁금)

- ① 위탁자는 이 계약서의 작성 및 금전의 신탁을 통해 이 계약을 체결하며, 이 신탁의 계약체결일 이후에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전을 추가로 신탁하기로 합니다.
-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금액 이외에 기존 퇴직금 새내유보금의 이전, 퇴직일시금신탁(퇴직보험 포함)으로부터의 계약이전, 다른 자산관리계약으로부터의 계약이전 또는 급여이전 등으로 이전되는 금전을 수탁받을 수 있습니다.

제5조 (신탁기간)

이 계약의 신탁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도해지일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경우에는 신탁계약의 잔액이 전일 제2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탁종료일까지로 합니다.

제6조 (수익자)

- ① 신탁의 원본 및 이익의 수익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로서 신탁자산에 대한 지분이 있는 자로 합니다.
- ② 수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자별 적립금액 및 기타 수익자에 관한 사항은 운용관리기관이 관리합니다.

제7조 (신탁관리인)

- ① 신탁관리인은 수익자를 대표하며 수익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신탁에 관한 재산상 또는 재산외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탁관리인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자로 합니다.
 1. 수익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
 2. 수익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자
- ③ 위탁자에 소속되어 있는 임원 등 위탁자측은 신탁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 ④ 위탁자는 신탁관리인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새로운 신탁관리인을 선임하여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⑤ 이 계약의 체결 시 신탁관리인이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19조 제2항에 의해서 수탁자가 사망하거나 제20조에 의해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위탁자는 지체 없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탁관리인을 선임하여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신탁관리인 부재로 인해 수익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수익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8조 (연금규약의 제출 및 변경)

-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자산관리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부에 신고·수리된 연금규약(별지1) 및 노동부의 신고·수리 확인서류를 이 계약 체결 시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금규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자는 변경할 내용을 수탁자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변경 후에는 지체 없이 변경된 내용의 통지와 함께 변경된 연금규약을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경사실의 통지 이전 및 연금규약의 제출 지연에 대한 책임은 위탁자가 부담합니다.

제9조 (운용관리기관의 통지)

- ① 위탁자는 운용관리기관과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그 내용을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 운용관리기관이 변경·취소되었을 경우에 그 내용을 즉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신탁금에 관한 사항,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탁재산운용에 관한 사항,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신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담보제공 및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통지·운용자사·확인(이하 "통지등"이라 합니다)을 받아 업무를 수행합니다.
- ③ 제2항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수탁자와 운용관리기관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합니다.

제10조 (신탁재산의 운용)

- ① 신탁재산을 운용하기 위한 방법은 관련법령 및 연금규약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익자가 정한 바에 따릅니다.
- ② 수익자가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지정하여 운용관리기관에 통보하면 운용관리기관은 수익자의 운용자사를 수탁자에게 전달하고, 수탁자는 운용관리기관이 전달한 운용자사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합니다.
- ③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서 제2항의 운용자사가 없는 금전 중 지급 또는 운용을 위해 대가·종인자금 및 수수료·자산비용에 따라 발생하는 전이자금에 대해서는 부속협정서에서 정한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 ④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다른 신탁재산과 구분하여 관리·운용합니다.

제11조 (원본과 이익의 보전)

이 신탁은 원본과 이익의 보전을 하지 아니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신탁재산의 예탁 및 보관)

수탁자는 신탁재산 중 유가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예탁결제원등에 예탁 및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신탁금의 지급)

- ① 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을 통한 운용자산에 따라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때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의 개인통보직연금제도 외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단,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② 제1항에서 운용관리기관 및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차리에도 불구하고 가입자의 운용자산이 자연되어 신탁금의 지급이 지연된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③ 회사는 가입자의 중도인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운용관리기관이 통지하는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가입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도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신탁계약을 이전하거나 개인통보직연금제도 등 다른 자산관리계약으로 급여이전을 요청한 경우 회사는 이를 이행합니다.
- ⑤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운용관리기관이 가입자로부터 장수할 수수료를 신탁재산에서 차감하여 운용관리기관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⑥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신탁금의 지급은 퇴직소득세 등 신탁금 지급과 관련한 제세금 징수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지급합니다.
- ⑦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에서 급여의 지급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이 앞편에서 '지급일'이라 하며, 적립금 매각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지급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내에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지급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일까지 계산된 적립금에 지급일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단,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되었을 경우 지급일 시점에 정상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 이하 '정상 처리시 지급액'이라 합니다. (실제 지급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더하여 보상합니다.)
-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2조(신탁금 지급의 연기)에 해당하는 경우 등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7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4조 (신탁원본)

신탁에 있어서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최초 신탁금을 신탁원본으로 하고, 제4조의 규정에 정한 추가수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신탁원본에 가산하고, 제13조의 규정에서 정한 신탁금의 지급, 제18조의 규정에서 정한 신탁의 중도해지, 제21조의 규정에서 정한 신탁의 종료 및 제23조의 규정에서 정한 신탁재산의 반환이 있을 때에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신탁재산에서 차감합니다.

제15조 (신탁재산의 표시)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유재산과 별도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표기합니다.

제16조 (세금, 사무비용)

신탁재산과 관련된 세금, 기타 신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신탁재산의 부족으로 인하여 세금 및 기타 사무비용등의 징수가 불가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제17조 (자산관리수수료)

자산관리수수료는 부속합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구합니다.

제18조 (중도해지)

- ① 사용자는 연금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가 파산 또는 폐업된 경우
 2. 사용자의 계약 관련 서류 기재내용상 중요부문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3.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 ③ 제2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1개월 이전에 서면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 ④ 다음 각 호의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특별중도해지로 처리합니다.
 1.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 영업장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를 요청한 경우
 2.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3.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 ⑤ 제4항에서 정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일반중도해지로 처리합니다.

- ⑥ 이계약이 중도해지되었을 경우,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재산을 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가입자의 개인통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⑦ 중도해지에 따른 신탁금의 지급사이에 관하여는 제13조 제7항을 준용합니다.

제19조 (수탁자의 시임)

- ① 수탁자는 수탁행위에 관하여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위탁자와 신탁관리인의 승낙 없이 수탁자의 자유를 사할 수 없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자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할 수 있습니다.
- ③ 수탁자가 사임하는 경우 위탁자는 새로운 수탁자를 선임합니다. 다만, 위탁자가 새로운 수탁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수탁자는 새로운 수탁자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④ 수탁자가 사임하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사무의 계산과 신탁관리인의 인화회에 신탁재산을 새로운 수탁자 또는 자산관리기관에게 이전하고 사무의 인계를 합니다. 다만, 수탁자의 사임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20조 (계약이전)

- ① 사용자는 연금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산관리계약으로 이전(이계약에서 '계약이전'이라 함)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에서 계약이전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계약이전을 받을 사용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적립금을 지급하고 관련 사무를 합니다. 다만, 적립금의 매각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지급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지급일 내에 적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할 적립금에 제4항에 따라 계산된 자연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2조(신탁금 지급의 연기)에 해당하는 경우, 제31조(연체)에 해당하는 경우 등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④ 제3항의 자연보상금은 '정상 처리시 지급액'에 지급일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되었을 경우 '정상 처리시 지급액'이 '실제 지급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더하여 보상합니다.
- ⑤ 제2조 제1항제8호의 적립금 이전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21조 (신탁의 종료)

- ① 회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퇴직연금 취급실적을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세부 내용은 부속합정서에서 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2조 (신탁금 지급의 연기)

천재지변, 신탁재산의 매각 지연,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의 폐쇄, 정지 또는 휴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탁금의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위탁자, 운용관리기관, 신탁관리인에게 이를 통지하고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지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신탁재산의 반환)

- ①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금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이 반환되는 경우 수탁자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위탁자에게 금전으로 반환합니다.

제26조 ★

(토직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

DC형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연금 사업자(수탁자)

제24조 (일부 수익자가 존속하는 경우의 업무 수행)

- ① 위탁자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중도해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신탁계약의 이행을 실행한 이후에도 이 계약의 수익자가 일부 존속하는 경우 이 신탁은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합니다.
- ② 수탁자는 존속하는 수익자에 대해 제3조에서 규정한 자산관리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하며, 이 신탁이 종료될 때까지 신탁재산과 관련된 세금, 기타 신탁사무를 처리함에 필요한 비용 및 자산관리수료는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25조 (계약의 승계)

위탁자는 수탁자와의 합의를 거쳐 계약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승계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자와의 합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제26조 (토직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

퇴직급여 등 신탁금의 지급에 따른 토직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는 관련 세법에
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7조 (양도 및 담보제공 등)

- ① 수익자는 이 신탁의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 제2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수익자는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연금의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선관주의의무)

수탁자는 이 계약의 취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가지고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29조 (인감신고)

위탁자는 자산관리계약용 인감을 수탁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30조 (신고사항)

위탁자 또는 신탁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 또는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증서·거래인감 등을 분실·도난·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위탁자 및 신탁관리인의 주소, 인감 또는 명칭의 변경, 사망, 행위능력의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1조 (면책)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이 계약과 관련한 모든 서류에 사용된 인감을 이미 제출된 인감과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 대조하여 동일한 것임을 확인한 후 실시한 신탁사무의 처리
2. 이 계약에 근거한 위탁자 및 수익자로부터의 지시, 청구, 통지, 신청 또는 정보를 수령하여 실시한 신탁사무의 처리
3.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기초한 신탁사무의 처리
4. 운용관리기관의 통지가 신탁 목적상 수탁자에게 부적절하거나 법령 등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수탁자가 신탁사무의 처리가 불가한 경우
5. 운용관리기관의 통지가 자연되거나 누락된 경우
6.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자가 신탁한 금액이 관련 법령 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의해 한정된 금액과 다른 경우
7. 위탁자가 연금규약에서 정한 기일을 초과하여 금원을 신탁한 경우
8. 천재지변, 유가증권 시장의 폐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운용관리기관의 통지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제32조 (계약의 변경 등)

- ① 회사는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고객창구와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자산관리(신탁계약)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사용자 또는 기업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사용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자산관리(신탁계약)의 시행일 30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경 전 내용이 기존 사용자 및 기업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사용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사용자 및 기업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항의 변경은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사용자가 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자산관리(신탁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사용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자산관리(신탁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⑤ 회사는 자산관리(신탁계약)를 회사의 고객창구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사용자 또는 기업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자산관리(신탁계약)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⑥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때,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되는 자산관리(신탁계약)의 시행일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제2항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⑦ 사용자는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제2항에 의하여 변경내용을 통보받았을 경우 그 내용을 기업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제33조 (부속합정서 내용의 결정 및 변경)

- ① 부속합정서에는 이 계약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을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결정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부속합정서 내용은 이 계약서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제34조 (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 신탁법령, 관련법규 및 수탁자 내부 등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제35조 (조항해석 및 관할법원)

- ① 이 계약서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사용자와 회사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와 회사가 합의하여 그 내용을 합의적으로 결정합니다.
- ② 사용자, 신탁관리인, 기업자 또는 회사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법원에 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36조 (회사의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 중단 등에 따른 기업자 손실보상)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기업자에게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합니다. 다만, 손실보상 방법은 회사의 다른 기업자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1. 회사가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의 말소를 신청
2.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취소 처분

제37조 (협의)

이 계약내용의 해석이나 이행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결정합니다.

제38조 (계약서의 작성 및 보관)

위탁자와 수탁자는 이 계약을 3부 작성한 후 위탁자와 수탁자 및 신탁관리인이 기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합니다.



제2조 (수수료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

① 제1조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별 부담주체 및 납입시기는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수수료 명칭	납입주체	납입시기
자산관리수수료	위탁자 또는 수익자	계약응당일 또는 매사업연도말 기준 1월 이내
중도해지수수료	위탁자	중도해지시 별도납부
계약이전수수료	위탁자	계약이전시 별도납부

②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수수료 납입기일 전 10일 이내에 수수료내역을 통지하고 납입안내를 하여야 하며, 납입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합니다. 단, 중도해지 수수료 및 계약이전 수수료의 경우 정항이 있는 경우 신탁재산에서 차감합니다.

1. 위탁자가 수탁자의 안내에 따라 별도 지정하는 계좌에 금전으로 수수료를 납입하는 방법
2. 위탁자의 신탁재산에서 차감하여 납입하는 방법 (매 수수료 납입기일 기준 장수)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제18조에 의한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중도해지일 계약서 제22조에 의한 계약이전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일 계약서 제22조에 의한 신탁종료의 경우에는 신탁종료일에 자산관리수수료를 취득합니다. 이때 자산관리수수료의 계산기간은 계약일 또는 직전 자산관리수수료 계산기간일 역일로부터 해당 자산관리수수료 계산기간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④ 이 계약에 별도의 정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에 지급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합니다.

⑤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수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납입을 독촉할 수 있으며, 수수료의 장수를 위해 자산매도 후 결제금액을 수수료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자산에서 차감하는 경우 현금성자산이 있으면 먼저 우선 취득하고, 현금성자산이 부족한 경우 부족금액의 106/100에 상응하는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3조 (수수료 징구를 위한 신탁재산 매각 순서)

수탁자는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로 신탁재산을 매각합니다. 다만, 사전에 위탁자와 수탁자간에 매각순서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1. 현금성자산(현행어음, 보통예금, 환매조건부채권, 매수계약 등)
2. 환매조건부채권, 매수계약(낮은 금리 우선 자산, 동 순위일 경우 매수일자 우선 자산)
3. 국내 집합투자증권(MF) 중 매수일자 우선 자산
4. 국내 집합투자증권(채권형) 중 매수일자 우선 자산
5. 국내 집합투자증권(혼합형) 중 매수일자 우선 자산
6. 국내 집합투자증권(주식형) 중 매수일자 우선 자산
7. 해외 집합투자증권(채권형, 혼합형, 주식형 순) 중 매수일자 우선 자산
8. 정기예금, 적금(낮은 금리 우선 자산, 동 순위일 경우 매수일자 우선 자산)
9. 실물유가증권(주식 또는 채권)
10. 파생결합증권(낮은 금리 우선 자산, 동 순위일 경우 매수일자 우선 자산)
11. GIC(낮은 금리 우선 자산, 동 순위일 경우 매수일자 우선 자산)

제4조 (운용자산이 없는 현금자산 등의 운용)

계약서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기 중인 자금 및 수수료 자산처리에 따라 발생하는 잔여자금에 대하여는 발행어음, 환매조건부채권, 매수계약, 보통예금 순으로 운용합니다.

제5조 (신탁금의 지급기일 및 반환기일)

① 계약서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신탁금의 지급기일 및 계약서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신탁금의 반환기일은 운용방법별 환매일정을 감안하여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운용방법별 지급기일 또는 반환기일 이하 '지급기일' 등이라 합니다. 이 다른 경우에는 최종 지급기일 등에 금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최종 지급기일 등 이전에 현금화가 이루어진 금액에 대해서는 제4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6조 (부속합정서 내용의 변경)

위탁자와 수탁자가 필요에 의해 이미 협의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미 체결된 부속합정서의 내용은 새로 체결되는 부속합정서의 내용으로 대체합니다.

제7조 (부속합정서의 작성 및 보관)

위탁자와 수탁자는 이 부속합정서를 3부 작성한 후 위탁자와 수탁자 및 신탁관리인이 기명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합니다.

신탁관리인 ★

주로 근로자 대표로 기재하며, 임원들은 기재 불가

사용자

사업장의 명판 및 사용인감 날인

(인)

회사

신탁금 운용자 날인

(인)



신탁관리인 주소 :

성명

(인)